



<b>의안번호</b>	<b>제103호</b>
-------------	--------------

<b>논산시 미혼모·부 지원 조례안</b>
-------------------------

<b>발 의 자</b>	<b>차경선 의원 외 5명</b>
<b>발의연월일</b>	<b>2019. 9. 10.</b>

# 논산시 미혼모·부 지원 조례안

의안 번호	제103호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19. 9. 10.

대표발의자 : 차경선

공동발의자 : 박승용 김만중

조배식 박영자

조용훈

## 1. 제안이유

- 저출산 문제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권에 머물고 있으며, 해외 입양은 세계 최상위 권으로 아동 수출국이란 오명을 받고 있는 부끄러운 실정으로, 이에 미혼모·부 가족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함.
- 미혼모·부 가족을 사회 구성원으로 인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며, 경제적 지원과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필요함.
- 미혼모·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면서 문화 및 복지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지원대상 규정(안 제3조)
- 다. 시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
- 라. 지원사업을 규정(안 제5조)
- 마. 관계공무원 등의 비밀유지를 정함(안 제6조)
- 바. 시행규칙(안 제7조)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,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2조, 제17조, 제17조의2,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」 제17조의2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15조의3, 제15조의4,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 제23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없음

다. 기 타

1) 조례안 : 별첨

2) 예고기간 : 2019. 9. 11. ~ 2019. 9. 16.(6일간)

## □ 조례안

논산시 조례 제 호

# 논산시 미혼모·부 지원 조례안

**제1조(목적)** 이 조례는 논산시에 거주하는 미혼모·미혼부와 그 자녀가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문화적 혜택과 복지에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정의)**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미혼모”란 결혼(사실혼 관계 또는 혼인이력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)을 하지 않은 상태로 임신 또는 출산을 하였거나, 출산 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을 말한다.
2. “미혼부”란 결혼을 하지 아니하고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을 말한다.
3. “미혼모·부 자녀”란 18세 미만의 아동(취학 중인 경우에는 22세 미만을 말한다)으로서 미혼모·부의 자녀를 말한다.

**제3조(지원대상)** 이 조례는 「주민등록법」에 따라 논산시에 주소를 둔 미혼모·부와 그 자녀(이하 “미혼모·부 가족”이라 한다) 중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상의 대상자에 대하여 적용한다. 다만, 출산 전 미혼모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상의 대상자와 관계없이 적용한다.

**제4조(시장의 책무)** 논산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미혼모·부 가족이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.

**제5조(지원사업)** ① 시장은 미혼모·부 가족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한부모가족 지원대상 중 미혼모·부 가족 실태조사
  2. 미혼모·부 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는 교육 및 홍보
  3. 미혼모·부를 대상으로 한 상담 등 지원 사업
  4. 미혼모·부 가정에 대한 동절기·하절기 각 2개월간 냉·난방비 지원
  5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②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.
- ③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**제6조(비밀 유지)** 미혼모·부 가족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및 관계기관의 직원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.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.

**제7조(시행규칙)**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	소 관 부 서	성 명
입 안 자	논산시의회 의원	차경선 의원 외 5명

## 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## □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

제2조(국가 등의 책임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의 권익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을 예방하고, 사회구성원이 한부모가족을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④ 교육부장관과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의 유치원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 및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의 학교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이해를 돕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자립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모든 국민은 한부모가족의 복지 증진에 협력하여야 한다.

제17조(가족지원서비스)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1. 아동의 양육 및 교육 서비스
2. 장애인, 노인, 만성질환자 등의 부양 서비스

3. 취사, 청소, 세탁 등 가사 서비스
4. 교육·상담 등 가족 관계 증진 서비스
5. 인지청구 및 자녀양육비 청구 등을 위한 법률상담, 소송대리 등 법률구조서비스
6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

**제17조의2(청소년 한부모에 대한 교육 지원)**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할 수 있도록 청소년 한부모의 선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의 학적 유지를 위한 지원 및 교육비 지원 또는 검정고시 지원
2. 「평생교육법」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교육비 지원
3.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8조에 따른 교육 지원
4. 그 밖에 청소년 한부모의 교육 지원을 위하여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교육 지원을 위하여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은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순회교육 실시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의 학업과 양육의 병행을 위하여 그 자녀가 청소년 한부모가 속한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설치된 직장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.

④ 여성가족부장관은 청소년 한부모가 학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교육부장관에게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.

## □ 「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」

제17조의2(가족지원서비스 등) 법 제17조제6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

한부모가족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“란 한부모가족에 대한 상담·심리치료를 말한다.

## □ 「문화예술진흥법」

제15조의3(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복지 증진 시책 강구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·사회적·지리적 제약 등으로 문화예술을 향유하지 못하고 있는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

제15조의4(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권자, 그 밖에 소득수준이 낮은 저소득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수급자격 및 자격유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가족관계증명·국세·지방세·토지·건물·건강보험 및 국민연금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고, 해당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. 다만,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자료의 확인을 위하여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다.

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이용권의 발급, 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 문화이용권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문화이용권의 지급·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## □ 「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」

제23조의2(문화소외계층의 범위)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.

1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
2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
  - 가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활급여 수급자
  - 나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및 같은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
  - 다. 「장애인연금법」 제5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
  - 라.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별표 2 제3호라목의 경우에 해당하는 사람
3.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
4. 그 밖에 경제적·사회적·지리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문화예술을 향유하기 위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